제2638호 2019. 2. 27. 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: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

전화: 3396-4955
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기관의장

구



⊚ ন	시
제2019-1	18호 : 도로명주소 부여고시
	고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a href="http://www.junggu.seoul.kr">http://www.junggu.seoul.kr</a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-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-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_						
공람						



제2638호 12-2 2019. 2. 27.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18호

# 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 구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 2019년
 2월
 27일

 서울특별시
 중구청장

#### ㅇ 도로명주소

27121	randaı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기준		
<del>종</del> 전주소	도로명주소	도 로 명 고시일	도 로 명부여기준		
황학동 74-5	서울특별시 <del>중구</del> 마장로5길 23-8	2019.02.27.	마장로5길의 기초번호로 부여		
		2010.06.30.	마장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		
ストネ テンフト 100 ピク	서울특별시 중구	2019.02.27.	동호로27길의 기초번호로 부여		
장 <del>충동</del> 2가 193-57	동호로27길 11	2010.06.30.	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 (www.jungqu.seoul.kr)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 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### ㅇ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 제2638호 12-3 2019. 2. 27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123호

# 「다신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」 지정 및 계획 결정(안) 주민 공람·공고

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 다산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5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및 서울특별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 구 건축위원회 및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## 1. 공람개요

가. 공람기간 : 2019. 2.27. ~ 2019. 3.13.(14일간)

나. 공람장소 : 중구청 주택과 (☎ 02-3396-5723 )

다. 공람내용 : 다산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(안)

#### 1. 2. 구역개요

가. 구 역 명 : 다산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(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)

나. 위 치 : 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

다. 면 적: 126,747 m²

#### 2. 3. 지정 배경 및 목적

- 가. 본 대상구역은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곽마을로서,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, 노후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계획을 수립중이며,
- 나.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개량이 필요하나 건축행위가 어려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유도하고,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#### 4. 건축물 리모델링·보전(건축물 외관 디자인 포함)에 관한 사항

가.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가이드라인

제2638호 12-4 2019. 2. 27.

- 다산권 성곽마을의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을 권장사항을 제시하였으며, 리모델링에 의한 완화사항 적용시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계획의 기준 적용

#### 5. 시와 자치구 정책에 관한 사항

- 건축선 후퇴부 및 필로티공간, 건물 사이 공간 등 노후주거지 내 흔히 발견되는 방치된 사유공간을 보행공간 또는 텃밭·화단, 쉼터, 폐기물수거함 설치 등 주민간 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 및 운영하여 마을경관을 개선하고 마을 내 부족한 커뮤니티공간과 생활지원공간을 확충
- 범죄예방환경 설계 가이드라인 : 마을의 안전과 치안을 고려하여 주요지점 및 범죄우려지역에 CCTV, 가로등, 보안등 등을 정비하여 밝고 안전한 골목길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 안전 및 재산보호

### 6. 골목길의 보전·정비 계획

- 마을골목길 특화 조성
  - 성곽예술문화거리와 연계한 다산골목,충현골목,앵커골목 조성
  - 마을길 간이쉼터 조성(벤치, 화단 등)
  - 가로환경개선(성곽마을 이미지특화)
  - 보행환경개선
  -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조성

#### 7. 건축기준 완화(연면적 증가에 관한 사항)

- 가. 건축주 등으로부터 적용의 완화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기준 완화 사항에 따라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 결정
- 나. 적용의 완화 심의 시 인센티브 운용계획을 준용하여 적용하되, 연면적의 증가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1회에 한해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% 범위
- 다.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계획
  -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(2017. 2. 9. 개정)에서 제시하는 연면적 증가 허용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%까지 가능(단, 완화요소를 적용한 건물에 한해서 적용)

#### [건축기준 완화사항]

완화항목	건축법	완화사항
대지안의 조경	제42조	미적용
공개공지 등의 확보	제43조	미적용
건축선의 지정	제46조	- 골목길 특성 보호에 한해 건축선 후퇴의무 완화 - 3층 이하 기존건축물에 한해 현황 인정 -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범위 결정
건폐율	제55조	- 현행법령기준 초과시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이내

제2638호 12-5 2019. 2. 27.

		- 수평 증축시 현행법령 이내 가능			
	-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범위 결정				
		-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+(기존 건축물의 연면적×완화비율),			
0 -1 =	-1)r.cz	기존 연면적의 30% 범위 이내			
<del>용</del> 적률	세56조	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이내			
		-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			
		- 인접대지 소유주와 사전협의를 통해 동의서 작성시			
대지안의 공지	제58조	- 3층 이하 기존건축물에 한해 현황 인정			
		-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범위 결정			
건축물의 높이제한	제60조	미적용			
공동주택의 일조확보	제61조제2항	미적용			

# [인센티브 적용 및 배점항목(최대 30%)]

구분	완화 범위	운영	계획내용	완화비율
		권장	전면공지 및 건축물사이공간 지침 준수시	5%
정 책	최대	권장	공유공간 조성시	5%
~~~	10%	권장	CPTED 지침 중 방범시설 관련지침 준수 시	5%
		권장	CPTED 지침 중 야간조명 관련지침 준수 시	5%
		권장	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, 부착시설물 처리 지침 준수시	5%
		권장	건축물 지붕의 형태 및 색채 지침 준수시	5%
	발 최대 15%	권장	저층부 입면분할요소 세부지침 준수시	5%
외 관		권장	담장의 조성방식, 높이, 재료 및 색채 지침 준수시	5%
되 뛴		권장	옹벽의 조성방식, 재료 및 색채 지침 준수시	5%
		권장	건축물 외부형태 지침 준수시	5%
		권장	대문 미설치 또는 대문 조성방식 지침 준수시	5%
		권장	주차장 출입구 조성방식 지침 준수시	5%
내 진	최대 10%	의무	대상: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m2이상 건축물 (목구조건축물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m2이상 건축물) 예외: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 의무화	10%
		권장	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 교체시	5%
		권장	외기에 면한 외벽의 단열성능 개선시	5%
에너지	최대	권장	콘덴싱 보일러 등 고효율 보일러 교체시	2%
절감	10%	권장	LED 조명 교체시	2%
		권장	생활용 상수절감을 위한 환경표지인증 제품 80%이상 설치시	2%
		권장	태양광 태양열 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시	2%

# 8.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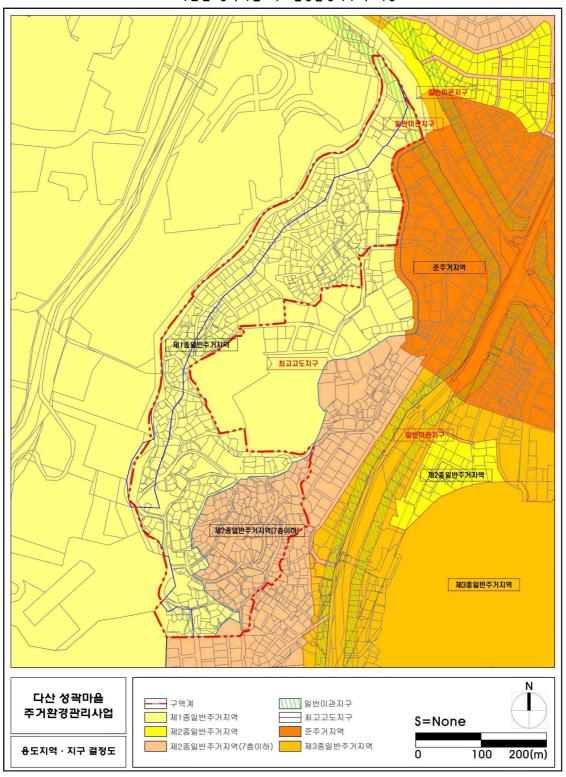
가. 공람장소 : 중구청 주택과 (☎ 02-3396-5723 )

나. 관계도서 : 중구청 주택과(중구청 6층)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기 비라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다산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도 1부. 끝.

제2638호 12-6 2019. 2. 27.

# 다산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도



제2638호 12-7 2019. 2. 27.

#### 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124호

# 「광희권(광희·장충)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, 지정 및 계획 결정(안) 주민 공람·공고

중구 광희동, 장충동, 신당동일대 광희권(광희·장충)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5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및 서울특별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 구 건축위원회 및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## 1. 공띾개요

가. 공람기간 : 2019. 2.27. ~ 2019. 3.13.(14일간) 나. 공람장소 : 중구청 주택과 (☎ 02-3396-5723 )

다. 공람내용 : 광희권(광희·장충)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(안)

#### 2. 구역개요

٦Н	구역명	0151		면적(m²)		비고
구분	T 770	위치	기정	변경	변경후	
	광희권(광희·장충) 성곽마을	중구				
신설	리모델링활성화구역	광희동, 장충동,	_	증)141,568.0	141,568.0	_
	(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)	신당동 일대				

#### 3. 지정 배경 및 목적

- 가. 본 대상구역은 2014년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·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9개권역 22개 성곽마을 중 하나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(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과 동시 진행)
- 나. 2013년 본 대상구역 내 성안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(16,745㎡)이 지정되고 2014년 건축디자인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었으나 리모델링 인허가건수는 0건임.
- 다. 본 대상지 내 옛 길, 소형필지 등 불리한 건축여건으로 인해 개량되지 못하고 노후화 된 건축물이 다수 분포하며, 현행법규에 맞지 않는 건축자산(문화주택)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(법적요건에 따른 15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비율:약 72.7%)
- 라. 이에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성곽마을 전체로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운용계획 및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, 개량이 필요하나 건축행위가 어려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화경개선에 기여코자 함

제2638호 12-8 2019. 2. 27.

#### 4. 건축물 리모델링·보전(건축물 외관 디자인 포함)에 관한 사항

#### 가.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가이드라인

-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"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결정조서"의 공통지침의 권장사항을 준수하되, 리모 델링에 의한 완화사항 적용시에는 다음 지침별 세부사항을 통해 추가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, 이를 적용 함.

#### 나. 한옥 등 건축자산 관리 가이드라인

- 광희권(광희·장충) 성곽마을 내 옛 길, 문화주택 등 역사특성을 보전하고 한양도성과 어우러지는 지역 경관 형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-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"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결정조서"의 특화지침 중 한옥 등 건축자산 관리지침 을 준수하되, 리모델링에 의한 완화사항 적용 시에는 다음 지침별 세부사항을 통해 추가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, 이를 적용함.

#### 다. 범죄예방환경 설계 가이드라인

- 마을의 안전과 치안을 고려하여 주요지점 및 범죄우려지역에 CCTV, 가로등, 보안등 등을 정비하여 밝고 안전한 골목길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 안전 및 재산보호

#### 5. 골목길의 보전·개량 또는 조성에 대한 사항

- 가. 골목길 개선을 통해 지역의 매력창출 및 골목커뮤니티 활성화
  - 골목길내 담장허물기 등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조성을 통한 골목커뮤니티 활성화
- 나.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주택가 마을길 정비 예정
  - 광희·장충동 주민소통방(주민공동이용시설) 모이所를 중심으로, 숨겨진 지역자산을 연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골목길 특화사업 계획 수립

#### 6. 건축기준 완화(연면적 증가에 관한 사항)

- 가. 건축주 등으로부터 적용의 완화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기준 완화 사항에 따라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 결정
- 나. 적용의 완화 심의 시 인센티브 운용계획을 준용하여 적용하되, 연면적의 증가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1회에 한해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% 범위, 용적률 300%이내에서 완화 가능

#### 다.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계획

-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(2017. 2. 9. 개정)에서 제시하는 연면적 증가 허용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%까지 가능(단, 완화요소를 적용한 건물에 한해서 적용)

#### [건축기준 완화사항]

완화항목	건축법	완화사항
대지안의 조경	제42조	미적용
공개공지 등의 확보	제43조	미적용
건축선의 지정	제46조	- 옛 길 등 골목길 특성 보호에 한해 건축선 후퇴의무 완화

제2638호 12-9 2019. 2. 27.

		- 3층 이하 기존건축물에 한해 현황 인정
		-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범위 결정
		- 현행법령기준 초과시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이내
건폐율	제55조	- 수평 증축시 현행법령 이내 가능
		-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범위 결정
	제56조	-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+(기존 건축물의 연면적×완화비율),
O 권 콘		기존 연면적의 30% 범위 이내
용적률		- 용적률 최대 300%(국계법 시행령 용도지역 용적률 상한 범위 내)
		-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
		- 인접대지 소유주와 사전협의를 통해 동의서 작성시
대지안의 공지	제58조	- 높이 3층 이하 기존건축물에 한해 현황 인정
		-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범위 결정
건축물의 높이제한	제60조	미적용
공동주택의 일조확보	제61조제2항	미적용

# [인센티브 적용 및 배점항목(최대 30%)]

구분	완화 범위	운영	계획내용	완화 비율
		권장	한옥 등 건축자산 관리지침 준수시	10%
정 책	최대	권장	담장허물기 등으로 공공이 사용가능한 녹지공간(3,3㎡이상) 설치 시	5%
	10%	권장	CPTED 지침 중 방범시설 관련지침 준수 시	5%
		권장	CPTED 지침 중 야간조명 관련지침 준수 시	5%
		권장	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, 부착시설물 처리 지침 준수시	5%
		권장	건축물 지붕의 형태 및 색채 지침 준수시	5%
		권장	저층부 입면분할요소 조성 지침 준수시	5%
외 관	최대	권장	담장 미설치 또는 담장의 조성방식, 높이, 재료 및 색채 지침 준수시	5%
	15%	권장	옹벽의 조성방식, 재료 및 색채 지침 준수시	5%
		권장	건축물 외부형태 지침 준수시	5%
		권장	대문 미설치 또는 대문 조성방식 지침 준수시	5%
		권장	주차장 출입구 조성방식 지침 준수시	5%
내 진	최대 10%	의무	대상: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㎡ 이상 건축물 (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㎡ 이상) 적용: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 의무화	10%
		권장	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 교체시	5%
		권장	외기에 면한 외벽의 단열성능 개선시	5%
에너지	최대	권장	콘덴싱 보일러 등 고효율 보일러 교체시	2%
절감	10%	권장	LED 조명 교체시	2%
		권장	중수도, 빗물이용시설 설치시	2%
		권장	태양광 태양열 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시	2%

제2638호 12-10 2019. 2. 27.

#### 7.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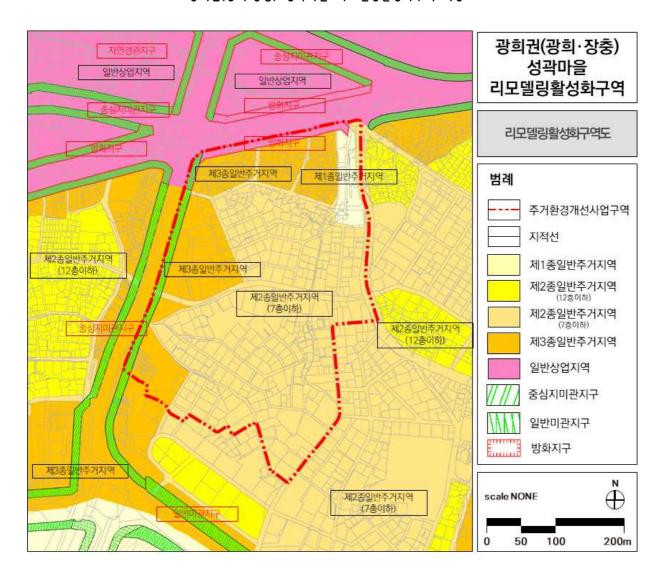
가. 공람장소 : 중구청 주택과 (🕾 02-3396-5723 )

나. 관계도서 : 중구청 주택과(중구청 6층)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

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광희권(광희·장충)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도 1부. 끝.

### 광희권(광희·장충)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도



제2638호 12-11 2019. 2. 27.

# 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125호

# 『성인마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』 폐지 공고

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-1682호에 따라 지정된 성안마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폐지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# 1. 열람내용

7 11	7 വിവ	0151		면적(m²)		비고
구분	구역명	위치	기정	변경	변경후	117
폐지	성안마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	중구 광희동2가 160일대	16,745	감)16,745	0	-

### 2. 기타사항 등

"리모델링 활성화 구역"의 기타 사항은 중구청 주택과 (☎ 02-3396-5723 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성안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도 1부. 끝.

제2638호 12-12 2019. 2. 27.

# 성안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도

